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결과('22~'24 적용)

□ (최종 지정결과) 기존 18종 → **최종 13종**

구분	연번	'21년 이전 우선구매 대상	'22~'24년 적용 우선구매 대상 : 총 13종
기존	1	성능인증	▷ 우선구매 대상 유지 (11종)
	2	우수조달물품지정	
	3	NEP(신제품인증)	
	4	GS인증	
	5	NET(신기술인증)	
	6	우수조달공동상표	
	7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8	혁신제품	
	9	녹색기술제품	
	10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11	산업융합품목	
	12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 우선구매 대상 유지(1종) (명칭 통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13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14	성과공유기술개발	
	15	우수산업디자인(GD)	▷ 일몰(4종)
	16	ICT융합품질인증	
	17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18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신규	-	-	▷ 신규지정(1종) : 재난안전제품인증

□ (향후일정) 변경 우선구매대상 적용('22.1.1~'24.12.31, 3년간)

※ 단, 일몰된 인증(위 15~18번) 중소기업 제품이 '21.12.31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24.12.31 기간 내 해당제품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유예 인정

# 참고1

## '22~'24(3년간) 적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연번	제품명	근거법령	인증설명	비고 (도입시점)
1	성능인증 (중기부)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05년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05년
3	GS시험인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3조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05년
4	신제품(NEP) (산업부)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시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	'06년
5	신기술(NET) (산업부 등 9개부처)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의2 등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	'06년
6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상생협력법 제8조	민·관, 대·중소기업, 수탁·위탁기업 간 등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제품 지원(구매조건부 신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10년 '13년 '14년
7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2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	'13년
8	녹색기술제품 (산업부)	녹색성장법 제32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13년
9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 품목을 선정된 제품	'14년
10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6개월 내)으로 지정,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16년
11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환경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19.7.30
12	국가 R&D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부처 추천 혁신성 인정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시행령 제33조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정 제품	'19.7.30 '20.1.13 '20.10.29
13	재난안전제품인증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4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제품	'22.1.1

\* 음영 표시한 제품은 수의계약 대상 인증

## 참고2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Q&A

### 1. '우선구매 대상 지정(일몰제)'에 대한 도입배경과 운영 방식은?

- 중소기업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관로를 지원하기 위해 '97년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중

\* 우선구매대상 : ('97) 10종 → ('05) 25종 → ('06) 5종 → ('14) 13종 → ('21) 18종

- 다만,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일부는 기술혁신성보다는 단순 품질개량, 부분 성능개선 관점에서 공급되어, 외부 지적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개선 방안('21.4.29)」 과제로도 논의

- 이에, '22년을 시작으로 3년마다 우선구매 대상을 혁신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일몰-진입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 조달정책, 기술·경영, 법률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검토

- 이를 통해 혁신적 제품 공급, 공공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해 우선구매제도 이행력 향상

### 2. 향후 인증부처가 '우선구매 대상 인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3년마다 중기부 '지정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다음 지정 안내는 '24년 상반기(예정)

\* 신규지정 신청과 더불어, 기존 대상이 지정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하여야 함

\* 지정 3년차('24년) 1~2분기에 '지정 신청 안내' 예정

### 3. 우선구매 대상에서 일몰되는 인증(지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 금번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증(지정)을 이미 받은 제품의 경우 '22.1.1. 이후부터는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22.12.31. 기준 유효기간이 유지 중인 인증제품은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적용
    - \* 예1 : 기존 18종 중 일몰된 인증(4종)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이 '21.12.1 ~ '24.11.30인 제품은 '24.11.30까지 우선구매 대상으로 유예 조치
    - 예2 : 기존 18종 중 일몰된 인증(4종)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이 '22.1.1 이후 신규(또는 연장)로 받은 인증제품은 우선구매 대상의 유예 적용을 받지 못함

### 4. 향후 일정은?

- 금번 우선구매 대상 지정 결과는 '22.1.1~'24.12.31까지 3년간 적용
  - 적용 기간 중, 전문가위원회의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연 1~2회 모니터링을 시행
    - \* 인증의 평가지표 개선, 관리체계 강화 요구 등 위원회 검토 의견
    - ※ 미이행 시 다음 일몰제 검토의 참고자료로 활용
- 다음 차수 일몰제 적용을 위해 '24년 상반기에 우선구매 대상 지정 절차를 운영하고, 결과를 '24년 하반기에 발표, '25~'27년(3년간) 적용
  - 이후의 차수도 동일한 절차와 일정으로 운영 예정

## 5. 우선구매 대상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 우선구매제도 참여 주체별 개선에 따라, '기술개발→판로지원→이윤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단순 품질개량, 부분 성능개선 등을 통해 무분별한 우선구매 시장 진입 목표
    - ⇒ 기술·혁신성을 갖춘 우수제품을 조달시장에 공급하고, 불필요한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 완화
  - (공공기관) 그간 관행적으로 구매가 용이한 제품 위주로 구매하여 우선구매 실적(중기물품 구매액의 15%) 달성을 중요시
    - ⇒ 기술·혁신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를 통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 맹목적·관행적 구매 행태 개선
  - (인증 소관부처) 기업 R&D 촉진 및 판로지원, 혁신성 강화 측면이 아닌 소관 인증제도 자체의 활성화 위주로 운영
    - ⇒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체질개선 유도